

秘密保持契約書 비밀유지 계약서

●●会社●●●● (以下「甲」という) と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以下「乙」という) は、両当事者が相互に開示する秘密事項の取り扱いに関し、次のとおり契約する。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현해농재통상합동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모든 당사자가 상호 공개하는 비밀사항의 취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第 1 条 (定義) 本秘密保持契約にいう秘密事項とは、相手方当事者に開示するに当たって、書面・口頭を問わず、秘密事項である旨を表明した甲および乙の技術上・営業上・人事上その他業務上の一切の知識および情報であり、書類に記載されるか、または磁気的もしくは光学的に記録された文書・図面・データとする。ただし、秘密事項の開示を受けた本契約当事者につ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は除外する。

- (1) 相手方当事者より開示を受けた時点において、すでに公知となっているもの
- (2) 相手方当事者より書面による同意を得たもの
- (3) 相手方当事者から提供された後に自己の責によらず公知となったもの
- (4) 正当な権限を有する第三者から秘密保持義務を課せられることなく合法的に取得したもの
- (5) 相手方当事者より提供された際、すでに自ら所有していたと立証しうるもの

제 1 조 (정의) 본 비밀유지계약에서 말하는 비밀사항이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함에 있어 서면, 구두를 불문하고 비밀사항임을 표명한 갑 및 을의 기술상, 영업상, 인사상, 기타 업무상 모든 지식 및 정보이며, 문서에 기재되거나 자기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문서, 도면, 데이터로 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자기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문서, 도면, 데이터로 한다. 단, 비밀사항의 공개를 받은 본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공개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공지 (公知) 된 것.
- (2)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것
- (3)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자기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것
- (4)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 3 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받지 않고 적법적으로 취득한 것
- (5)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았을 때,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

第 2 条 (秘密保持義務) 甲および乙は、第 1 条で知りえた情報を、日本国民法第 644 条に定める善良なる管理者の注意をもって管理・保持するものとする。

②甲および乙は、受領した秘密事項を甲乙双方が合意した使用目的以外に使用してはならない。

제 2 조 (비밀유지 의무) 갑 및 을은 제 1 조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일본국 민법 제 644 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보관한다.

② 갑 및 을은 수령한 비밀사항을 갑과 을이 합의한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第 3 条 (使用目的) 甲および乙は本件の秘密事項を_____の目的としてのみ使用する。

제 3 조 (사용 목적) 갑 및 을은 본건 비밀사항을_____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第 4 条 (複製・複写) 甲および乙は、第 1 条で定める秘密事項について、必要のある場合にのみ複製・複写を行なうことができる。

제 4 조 (복제 및 복사) 갑 및 을은 제 1 조에서 정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복제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第 5 条 (秘密情報の返還等) 甲および乙は、本秘密保持契約第 3 条に定める目的が達成された場合、または開示者から秘密事項の返還請求がなされた場合には、当該秘密事項の使用を直ちに中止し、受領した秘密事項に関する原本、複製および要約を速やかに開示者に返還し、または開示者の指示に従って廃棄等を行い、これを証するものとする。

제 5 조 (비밀정보의 반환 등) 갑 및 을은 본 비밀유지계약 제 3 조에서 정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공개자로부터 비밀사항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사항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며, 수령한 비밀사항에 관한 원본, 복제본 및 요약본을 즉시 공개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개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第 6 条 (秘密保持義務の例外) 甲および乙は、第 3 条で定めた使用目的の達成に必要な範囲のみにおいて、両当事者の役員および従業員、ならびに秘密事項を受領した当事者(以下、「受領当事者」という)が依頼する弁護士、公認会計士、税理士その他の外部アドバイザー(以下、総称して「役員等」という。)に対して、秘密事項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②受領当事者は、前項の規定に基づき秘密事項の開示を受ける第三者が法律上の守秘義務を負う者ではないときは、本契約に定める秘密保持義務と同等の秘密保持義務を当該第三者に課して、その義務を遵守させるものとし、かつ、当該第三者においてその義務の違反があった場合には、受領当事者による義務の違反として、相手方当事者に対して直接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

③第 2 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受領当事者は、法令または裁判所、監督官庁その他受領当事者を規制する権限を有する公的機関の裁判、規則もしくは命令に従い、必要な範囲において秘密情報を公表または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受領当事者は、本項に伴う公表または開示を行った場合には、その旨を遅滞なく相手方当事者に対して通知するものとする。

제 6 조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갑 및 을은 제 3 조에서 정한 사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양 당사자의 임원 및 직원, 그리고 비밀사항을 수령한 당사자(이하 '수령 당사자'라 한다)가 의뢰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외부 고문(이하 총칭하여 '임원 등'이라 한다)에게 비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수령 당사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사항의 공개를 받는 제 3 자가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경우는 본 계약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와 동등

한 비밀유지 의무를 해당 제3자에게 부과하여 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제3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령 당사자의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③ 제 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령 당사자는 법령 또는 법원, 감독관청 기타 수령 당사자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의 재판,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공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수령 당사자는 본 항에 따른 공표 또는 공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7条 (損害賠償) 甲および乙は、受領当事者が本秘密保持契約に違反して秘密事項を漏洩した場合は、書面により通知して直ちに本契約を解除できるものとする。

②前項の場合において、相手方当事者は、その違反行為の差止め、原状回復を請求および自らが被っ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 7 조 (손해배상) 갑 및 을은 수령 당사자가 본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여 비밀사항을 누설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위반행위의 금지, 원상회복을 청구 및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8条 (有効期間) 本秘密保持契約の有効期限は、契約締結日より1年間とする。なお、本秘密保持契約の延長などについては、当事者の協議により別途に決定するものとする。

②前項で定めた期間に関わらず、本契約終了後においても、第2条に定める秘密保持義務および第7条に定める損害賠償については2年間継続するものとする。

제 8 조 (유효기간) 본 비밀유지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본 비밀유지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결정한다.

② 전항에서 정한 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 2 조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 및 제 7 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第9条 (協議) 甲および乙は、常に相手方との信頼関係の維持に務め、本秘密保持契約の条項に疑義があり紛争が生じた場合、または本秘密保持契約に規程のない事項について紛争が生じた場合は、信義則に則り、当事者の協議で円満に解決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②本契約は、日本法を唯一の準拠法として解釈される。

제 9 조 (협의) 갑 및 을은 항상 상대방과의 신뢰관계 유지에 노력하며, 본 비밀유지계약의 조항에 의문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본 비밀유지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신의칙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본 계약은 일본법을 유일한 준거법으로 해석한다.

第10条 (合意管轄) 前条項によっても紛争が解決されない場合、本秘密保持契約に関連する一切の訴訟管轄は、当事者のうち訴訟を提起した側の住所を管轄する裁判所とする。

(현해농재통상 서식 1 호)

제 10 조 (합의관할) 전조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 비밀유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 관할은, 당사자 중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以上、本秘密保持契約の成立を証するため、本書 2 通を作成し、甲乙の記名捺印のうえ各 1 部を保管する。

이상과 같이 본 비밀유지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면을 2 통을 작성하며, 갑과 을의 기명 및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契約締結日 계약체결일 20XX 年년 XX 月월 XX 日일

甲 갑 : ●● 회사 ●●●●

(●● 회사●●●●)

○○도○○시○○로 XXX 번길 XX

(○○道○○市○○路 XXX 番ギル XX)

乙 을 : 玄海農財通商合同会社

(현해농재통상합동회사)

福岡県福津市中央 5 丁目 6 - 3 0

(후쿠오카현 후쿠츠시 중앙 5 가 6 번 30 호)

代表 대표 ○○○ (인 또는 서명)

代表 石坂 晃 (印または署名)

以上 이상